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13호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414호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415호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정선군 조례 제2416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8
- 정선군 조례 제2417호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정선군 조례 제2418호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45
- 정선군 조례 제241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정선군 조례 제2420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54
- 정선군 조례 제2421호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9
- 정선군 조례 제2422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 정선군 조례 제2423호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73
- 정선군 조례 제2424호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76
- 정선군 조례 제2425호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81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5-27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5
- 정선군 고시 제2015-28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88
- 정선군 고시 제2015-29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0) 실시계획 인가고시 ... 8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295호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91
- 정선군 공고 제2015-303호 분묘개장공고(1차) 97
- 정선군 공고 제2015-307호 2015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99

조 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3호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공포, 2014.9.25. 시행)에 따라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재)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및 평가,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단 구성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이며 간사는 예산담당
-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경영실적평가 관련 제출서류 규정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성과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단은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 군수는 5년 이상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요청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등을 위탁 가능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4호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 정선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정선군민의 날(6월 1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제3조(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2. 추천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나.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 다. 군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추천 및 선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에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수여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정선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제2항의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역할 및 활용)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이 원할 경우 그 관련분야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예군민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무 등) ① 명예군민은 그 원(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를 질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명예군민을 초청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군을 방문하거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자문·협조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취소 등)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선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의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 명예군민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정선군
JEONGSEON COUNTY

사진
(반명함)

성 명 [한 글]

성명[영문]

(뒷 면)

NO_

명 예 군 민 증

Honorary Citizen of Jeongseon County ID Card

소 속
Affiliated organization

직 위
Position

성 명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본 증을 소지한 사람은 정선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정선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 선 군 수(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규격 : 5.5cm(가로) × 8.5cm(세로)
(변형가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명예군민패

소 속 / 직 위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각
별히 애써주시고 계시기에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정선군 명예군민패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선군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
선군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민을 대표하여
강원도 정선군수

○ ○ ○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0조 관련)

연번	수 여 년월일	사진	수여자 인적사항					결재			
			성명 (성별)	국적	직위 (직업)	생년 월일	주소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개 정 이 유

-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휴대가 용이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정선군민과 같은 권리의무 행사 시 편의를 도모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패를 구분하여 수여함으로써 권리의무 행사의 편의 도모(안 제5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의무(제21조)를 규정하는 법조항 정정(안 제7조)
- 군수는 명예군민의 역할수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정적 조치가 가능(안 제8조)
- 명예군민증 제작을 위한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5호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소속기관의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외”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휘, 감독”을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휘, 감독”을 “지휘·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휘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휴대등”을 “휴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 ·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에 한”을 “해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연가계획을”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초과하는 자”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여행 기타”를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일단위”를 “반일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를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을 “경우 그”로, “경조사에 한”을 “경조사에 한정”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연가일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하는”을 “정한”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를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로,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를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

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상으로 인하여”를 “부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있 을”을 “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직접 필요한 기간”을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병역법」 기타”를 “「병역법」 또는 그 밖의”로,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를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기관에 소환된”을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교통차단 기타”를 “교통차단,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휴가를 얻”을 “휴가를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여성보건휴가를 받”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성보건 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임신공무원”을 “임신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영리업무및검직”을 “영리업무 및 검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u>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 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취임할 때에 <u>소속기관의 장 앞에서</u>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u>정선군(이하 “군” 이 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 라 한다)은 -- 제47조에 따라----- - ----- 소속기관장-- ----- -----.</u>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 한다.	② ----- 따 른 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있던 <u>자</u> 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 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u>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 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 재지변 <u>기타</u>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 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 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 <u>그 밖에</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u>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u>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④ <u>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u> <u>제1항에 따라 --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u> <u>위-----</u> -.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보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보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⑤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

② -----

----- 그 밖-----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 사람은 -----
----- 지휘 · 감독----- . --

----- 지휘 · 감독-----.

② ----- 사람이 -----

----- 해당 -----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 사람
은 ----- 지휘
· 감독-----.

② ----- 사람이 -----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

----- 해당 -----
-----.

③ -----

----- 그 밖의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15일의 범위에서 -----
-----.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휴대 등 -----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한다)

2. 3. (생 략)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1. (생 략)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국외의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에 한정-----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
-.

② ----- 초과하는 사람-----
--. ----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
-----.

③ ----- 반일 단위-----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 공제) ① (생 략)

②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③ (생 략)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 제18조에 따른-----
----- 해당 -----
----- 범위-----

-----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

⑥ ----- 해당연도-----
----- 범위--
----- 해당연도-----
----- . -- 경우 그-----
----- 경조
사에 한정-----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한-- -----
----- 해당연도-----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
고, 15일 미-----

---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21조(병가) ① -----
호의 어느 하나----- 범위-----

----- 제20조
제3항에 따라-----
-----.

1. ----- 부상으로-----

2. 전염병에 걸려-----

----- 있을 --

② -----
----- 요양이 필
요한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호
의 어느 하나----- 직
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 따른 징병
검사·소집·검열·점호 -----

2. -----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
3. 법률에 따라-----

4. 5. (생 략)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
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
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
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
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
을 수 있다.

4. 5. (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
강검진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따른 -----

8. ----- 교통차단, 그 밖-----

9. -----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

제23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 휴가를 받-----.

② 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일 전
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
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
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신 설>

<신 설>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
----- 여성보건휴가를
받----- . ----- 여성보건
휴가-----.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 입
신한 공무원-----
-----.

<삭 제>

⑦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신 설> <신 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u>범위내</u>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4장 <u>영리업무및겸직</u>	2. <u>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u>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u>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u>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 ----- <u>범위</u>----- -----. 제4장 <u>영리업무 및 겸직</u>
--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문을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 영·유아 보육 공무원, 장기재직 공무원,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영·유아 보육공무원에게 연6일 이내의 보육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7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거나 비상근무 등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1항)
- 기타 문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6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선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정선군의회 제출 전

제6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7조(분석평가 결과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 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6.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와 연계 지원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7호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주민”을 “정선군 주민”으로, “정선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효율 적인”을 “효율적인”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을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를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 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 운용”을 “기금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4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을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자활기업 사업자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을 “대여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속하는 자”를 “속하는 사람”으로, “당해 연”을 “해당연”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육성사업”을 “보호·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지도 육성”을 “지도·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5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를 “군수는 기금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금운용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설립)”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금을”을 “군수는 기금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 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금의지원”을 “기금의 지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1호의”로, “한한다”를 “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를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원방법등)”을 “(지원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원절차, 방법”을 “지원절차·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가 천재지변 기타”를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로, “기한내”를 “상환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을 “1회에 한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대여금의 감면)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채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납자의 융자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채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채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채납자가 5회 이상 채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u>정선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u>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u>자를 말한다.</u>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u>자를 말한다.”</u>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u>규정한 단체를 말한다.</u>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 3. (생략)	<u>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1조(목적) ----- ----- <u>같은 법</u> ----- ----- <u>정선군 주민</u>----- -- <u>사회복지기금</u>----- ----- <u>효율적인</u>- ----- ----- <u>정합</u>----- -. 제2조(정의) ----- 뜻 <u>은 다음 각 호와 -.</u>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 ----- <u>사람을</u> -----.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u>규정한 사람을 말한다.</u>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u>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

④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생략)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생략)

4. 기금운용-----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자활기업이-- -----

2.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

3. 영 제37조에 따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
----- 대여받-----

나. (현행과 같음)

5. ----- 속하는 사람-----
----- 해당연----- 한정한다)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3. (생략)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7. 8. (생략)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생략)

7. 그 밖에 -----

② -----
--.

1. 「장애인복지법」-----

2. 3. (현행과 같음)

4. -----
보호·육성사업

5. 그 밖에 -----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지도·육성

7.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2. (생략)

② (생략)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기금운용위원회

제9조(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 -----

군의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결산) ① ----- 출납폐쇄 후 --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제9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

-----.

제10조(기능)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3. (생략)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지원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제11조(구성) ① -----
----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② -----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풍부
한 사람

2. 3. (현행과 같음)

④ ----- 1명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 해당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
----- 범위에서 수당·여
비 그 밖에 -----.

제4장 기금의 지원

제15조(기금의 보조) -----
-----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
7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지원방법등)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자금대여)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대여금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 (생략)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정한다.

② -----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
-----.

제17조(지원방법 등) -----
----- 지원절차·방법 -----

--.

제18조(자금대여) ① -----
----- 자활기업마다 -----
-----.

② -----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③ ----- 사
람이 -----

-----.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이 -----

-----.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자와 연
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
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③ ----- 사람과 ---
-----.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 -----
----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
상환기간 내-----
-----.

② ----- 1회
에 한정-----.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기금의 회수 등) ----- 호
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

5. 그 밖에 -----

제24조(대여금의 감면)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
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
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제24조 (생 략)

<신 설>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채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결손처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납자의 융자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건적가격이 채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채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채납자가 5회 이상 채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기금(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감면규정 및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법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 상위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의2)
-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나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6개월 내에 분납할 경우와 보증인이 상환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및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안 제24조)
- 융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신설 안 제25조)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8호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3.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2. 노인의 날·경로의 달·아버이 날 행사 참여자
3. 장수노인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교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및 건강보조·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 제6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 날·경로의 달·아버이 날 등 행사비
3. 제6조제3호에 따른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4. 제6조제4호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 및 효행우수자 표창 행사비

제8조(장수축하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호의 장수축하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수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30만원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매년 지급한다.

- ② 장수축하금은 정선아리랑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다.
- ③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등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장수축하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65세이상 노인들은 1970~1980년대 가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로서 이제는 그 노인들의 병고·장애·외로움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며,
- 정선군의 인구중 65세이상의 노인이 21.3%로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효 사상과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노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1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작목반”이란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의 공동유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융자기관인 농·축협과 협약체결로”를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농·축협과 융자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 각각 “군수는 기금”으로,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업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사업당”을 “사업마다”로, “80%”를 “80퍼센트”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호”로, “2%로 고정금리”를 “1.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융자기관”을 “금융기관”으로, “40%”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해당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기금사업의 지원조건 및 한도액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지원하는 기금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작목반”이란 농축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 9. (생 략) 제5조(기금운용) ① ~ ③ (생 략)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u>용자기관인 농·축협과 협약체결로</u>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u>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	<u>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작목반”이란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의 공동유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5. ~ 9.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용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농·축협과 용자업무 대행 약정을 체결하여</u> -. ----- -----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u>군수는 기금-----</u> ----- <u>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u> ----- -----. ② ----- ----- <u>선임한다.</u> ③ -----

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생 략)

제9조(회의)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및 작목반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

2. (생 략)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고정금리로 한다.

4. (생 략)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

---- 군의회 의원-----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 회의를 시작하고-----
-----.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

----- 농업법인-----.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

-----.

1. ----- 사업마다 -----
-- 80퍼센트 ----- 7
천만원-----
--- 2억원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 1.5퍼센트-----.

4. (현행과 같음)

5. -----
----- 금융기관-----

금의 40%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신 설>

-- 40퍼센트-----
 ---.

6.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해당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개 정 이 유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군 농업·농촌발전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규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작목반 정의 재해석 및 조합명칭 정정(안 제2조제4호)
- 금융기관(농·축협)과의 융자업무 대행약정 문구 명시(안 제5조제4항)
- 기금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및 융자금 이율 인하(안 제12조제1호, 제3호)
 -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농업인(5천만원 ⇒ 7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최고 1억원 ⇒ 2억원)
 - 융자금 이율 인하: 연 2퍼센트 고정금리 ⇒ 1.5퍼센트
- 융자금이 투입된 시설물 등의 후취 담보 요건 신설(안 제12조제6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0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 생약유통센터(이하 "생약유통센터"라 한다)는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생약유통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판매장
2. 약초시장
3. 생약가공공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기능) 생약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
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3. 대농민 상담 및 유통정보 전파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생약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약유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① 생약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생약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공과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관리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3.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한 때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그 밖의 유지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5.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군수가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를 받고자 할 경우 퇴소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취소(해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 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그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가 판단하여 계속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이나 망실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 생약유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그 명칭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생약유통센터의 명칭을 표기한 서식, 서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분량이 모두 소모되는 날까지 사용한다.

[별지 서식]

사 용 허 가 취 소(해 지) 원 서

시설현황	시설물명			
	소 재 지			
	구 조		사용면적	
신 청 인	주 소			전화
	성 명		생년월일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 등 사유				
허가취소 등 요청일	년 월 일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해지)를 받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개 정 이 유

- 생약공판장의 매각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안 제 5조, 제7조제1항)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요율 및 사용허가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준용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규정으로 추가(안 제12조)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1호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 가공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의 용역과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영위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인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
 - 나.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 다.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인 작업장 구비
 - 라.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와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등은 제2항의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식품가공사업 지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4.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선군농산물 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

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3장 식품안전성 관리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해당 정책 실시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등의 정보 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정보공유 등)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장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제15조(설치 등)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지원 및 안전관리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비자
2. 사업자
3. 관련분야 전문가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마케팅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외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포함
한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
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
인트로 도색해야 한다.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한다.4) 1세목, 2세목 및 3세목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
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
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 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 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체 시설의 품목별 개별기준

☐ 메주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장류제조

- 된 장 제조과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 고추장 제조과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류 : 재료 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 다류(액상차 등) 제조

- 제조과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 절임김치 제조

- 제조과정 : 원료-선별-절단-세척-담금(절임)-탈염,세척-탈수-포장
또는 용기에 담기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 발효 식품류 제조

- 제조과정 : 원료-선별-세척-당화-교반-숙성-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제 정 이 유

- 정선군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로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제2조)
- 행정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4조)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기본계획, 농산물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 시설기준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제7조)
- 식품안전 추진계획, 조사 및 지도·감독, 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와 촉진, 정보공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안 제18조)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2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선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업무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

성화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해당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자
2. 민간기업
3. 상공회의소
4.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5.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2.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과 그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이견과 갈등 조정
-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1+\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
-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환수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등의 완화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3호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4에이치활동(이하 “4에이치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 요 내 용

- 4에이치 활동 적용범위(안 제2조)
-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3조)
-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6조)
- 4에이치 활동 결산보고, 지도·검사(안 제7조, 안 제8조)
 - 주관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결산보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검사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4호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정선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지속적 양성을 위하여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기관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행정담당을 각 1명씩 둔다.

1. 학장: 군수
2. 부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3. 교학부장: 기술지원과장
4. 교수부장: 기술연구과장
5. 교학실장: 사회지도담당 주사
6. 행정담당: 교육업무 주무관

②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교수 등) ① 대학의 교육 및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교수 및 강사는 학장이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담당 공무원, 해

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운영 계획
 2.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3. 그 밖에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학장이 학과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3장 입학 및 교육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가지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따로 정하는 입학지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 ③ 대학의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대학의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조정·심의를 거쳐 입학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등록) 제6조의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

(이하“교육생”이라 한다)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を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동의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

제8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국비 및 군비로 운영하며 교육생에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① 대학의 수업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화품목
 2. 환경농업·임업 및 축산업
 3.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 가공과 유통
 4. 농업·농촌개발
 5. 그 밖의 교양과목
- ② 교육방법은 이론강의와 현장학습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4장 교육생 및 졸업생 관리

제10조(출석·결석 및 공가) ① 수업기간 중 교육생의 출석 및 결석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수업시간에 결강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가정의 경조사 등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교육생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해당 수업시간의 시작시각부터 30분을 초과할 경우 지각으로,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다만, 지각 또는 조퇴가 각각 3회인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

②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결석으로 보지 않고 공가로 인정한다.

1. 「병역법」 등 법령에 따라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전계획에 따라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경우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경우

제11조(제적)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생을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때

제12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는 퇴학, 경고 등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졸업 등) ① 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중 총 수업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업시간에 달하지 못한 교육생은 유급되며 다음년도에 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졸업생 우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졸업생에게는 군의 각종 시범사업 및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예산계상)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수당) ① 군수는 교수에게 위촉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외래강사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강사기준에 준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학사규정)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학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농업대학의 졸업생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
-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발전 기여

주 요 내 용

-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조직 규정(안 제3조)
 -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행정담당을 각 1명씩 두도록 규정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학장이 학과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함.
- 입학자격 및 선발 규정(안 제6조)
 - 군에 주소를 가지고 관할 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 밖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 가능
- 수업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함(안 제9조)
- 등록 및 졸업 규정(안 제7조, 제13조)
 -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등록, 미이행시 입학 취소 가능 (제출서류: 입학동의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해당 교육과정 중 총 수업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 가능
 - 수업시간에 미달한 교육생은 유급되며, 다음 연도에 입학 불가
- 상벌 규정(안 제11조,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수업을 받지 않거나,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때 제적처리함
 -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에게 포상
 - 교육생으로서의 품위 손상 시 퇴학, 경고 등 징계조치
-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예산지원 규정(안 제15조)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5년 4월 15일

정선군 조례 제2425호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말한다) 오전 11시에 해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그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주최: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2. 주관: 정선군농촌지도자연합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주최·주관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이 경우 부문별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1명
 2. 우수농업인: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 가. 식량작물

- 나. 원예작물
- 다. 특용작물
- 라. 축산분야
- 마. 임업분야

3. 농업봉사: 농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각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정선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상대상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2.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3명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2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수상자 예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중앙단위를 포함한다) 또는 강원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다.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농업인의 날 행사의 시상, 재정적 지원, 군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포상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

주 요 내 용

- 농업인의 날 개최를 규정(안 제2조)
 - 국가의 농업인의 날(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을 규정(안 제3조)
- 농업인의 날 행사 시상부문 규정(안 제4조)
- 농업인의 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수가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규정(안 제7조)
 -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또는 협조 가능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5-27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군고시 제2008-17호(2008. 3. 27) 및 정선군고시 제2008-21호(2008. 4. 8)에 따라 고시된 태왕리리더스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30조항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당초 고한태왕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정선군고시 제2008-17호)되고, 2014. 4.27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이 취소(정선군고시 제2012-38호)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다. 면 적 : 12,237㎡(폐지)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폐지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정선 고한 (태왕아파트)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12,237	감)12,237	-	정선군고시 제2008-17호 (2008.3.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⑫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12,237㎡ → 0㎡ (감 12,237㎡)	- 대상지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고한태왕 리더스아파트)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이 취소(정선군고시 제2012-38호)되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고한 삼운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중으로 - 당초,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태왕리더스 아파트 건립사업)실시계획에 (정선군고시 제2008-17호) 따른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정선군고시 제2008-21호)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 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237	-	12,23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2,068	-	12,068	98.6	
	제3종일반주거지 역	12,068	-	12,068	98.6	주택용지
녹지 지역	소계	169	-	169	1.4	
	자연녹지지역	169	-	169	1.4	진입도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9	11	국지 도로	14	중로3-6	고한리 36-8	일반 도로	정선고 제08-17호 (2008.3.27)	

3)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 폐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공동 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 폐 율	◦ 20% 이하	-
		용 적 륜	◦ 270% 이하	-
		높 이	◦ 공동주택 : 18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 : 3층 이하	-
		배 치	◦ 판상형으로 4호연립 이내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폐지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	정선군 고한읍 36-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계획 구역 내 건축은 단일주체에 의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	
교통 처리	지침도상에 제시된 위치 (차량출입불허구 간)	◦ 대상지 북측 소1-6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폐지

정선군 고시 제2015-28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정 선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대한지적공사 정선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여량지구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1,296필지 890,259㎡

지구명	위 치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7개 지구	1,296	890,259	
여량1지구	여량면 여량리 182 번지 일원	83	41,530	아리랑전수관 일원
여량2지구	여량면 여량리 149-30번지 일원	302	86,092	옥산장여관 일원
여량3지구	여량면 여량리 109 번지 일원	214	77,537	여량농협 일원
여량4지구	여량면 여량리 305-3 번지 일원	171	136,428	여량면사무소 일원
여량5지구	여량면 여량리 320 번지 일원	207	124,642	성도아파트 일원
여량6지구	여량면 여량리 87 번지 일원	207	254,881	여량 중·고 일원
여량7지구	여량면 여량리 402 번지 일원	112	169,149	녹구만이 입구 일원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5. 기타

정선군 고시 제2015-29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0)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원도고시 제2013-230호(2013.6.7.)로 결정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2-50호선)
- 2) 명 칭 :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995㎡
- 2) 규 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노선명	폭원	연장	기시행	금회시행	
도 로	소로 2-50호선	8-10m	340m	-	• 교량 L=17m, 도로L=33m (산216-16번지~5-26번지)	미집행 L=29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문화관광과장)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0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m ²)	(m ²)	성 명	주 소	
1	고한읍 고한리	산216-38	임	1,914	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정암사	고한리 산214	
2	고한읍 고한리	산216-1	도	6,936,478	11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정암사	고한리 산214	
3	고한읍 고한리	산216-14	임	39,772	464	국(건설교통부)		
4	고한읍 고한리	산216-16	대	5,797	414	강원도		
계					995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5-295호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군민이 책과 소통하고 지역문화공간 거점역할을 할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인력지원 등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10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15. 4. 10 ~ 4. 20(10일간)
- 지원대상 : 정선군 소재 공·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
- 사업내용 : 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 일자리 창출 등
- 사 업 비 : 22,500천원
 - 심사를 통한 사업비 차등 지원
 - (1순위 10,000천원, 2순위 7,500천원, 3순위 5,000천원)

2. 응모대상 및 기준

- 응모대상 : 공고일 기준 등록 공·사립 작은도서관
- 선정기준
 - 지역적·전문적 특성을 가진 작은도서관 우선 지원
 - 접근성과 개방성 및 대중성이 있는 도서관
 - 운영상태 양호하고, 자립 운영의지가 강한 도서관
 - 도서관 운영조직이나 운영위원회, 후원회 등 구성 운영되는 도서관
 -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고, 주민참여율이 높은 도서관
 - 1일 7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개관 및 운영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도서관명							행정동명	읍면
도서관 현황	등 록 일					면 적	m ² (평)	
	소 재 지							
	연락처		전화 및 핸드폰					
			e-mail					
	운영 주체	공립	.직영() .위탁()					
		사립	.아파트() .복지관() .개인() .아동시설()(시설명 기재) .종교시설()(시설명 기재) .기타 시설 및 단체(시설 및 단체명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운영자(실무자)		성명		핸드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첨부서류	○ 작은도서관 등록증 1부(정선군 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 대장 1부(정선군 대장 확인)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별첨자료 포함) ○ 시설사용권 확보 근거자료(건물사용허가서 및 계약서 등)							
【준 수 사 항】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를 수용하겠음.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선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제반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작은도서관명 : (직인 또는 대표자인) 정 선 군 수 귀 하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
-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5 ~ 12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3. 지역여건 및 도서관 주요 현황

- 지역여건 및 접근성
 - 지역적 특징(환경) :
- 도서관 주요 현황
 - 보유도서 : 권
 - 시설장비 : 예시) 안내카운터, 서가, 열람대, 컴퓨터, 도서관리프로그램 등
 - 공간구성 : 예시) 열람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등
 - 주 이용층 : 예시) 어린이, 청소년 등
 - 운영시간 : 평일(: ~ :) / (토,일 : ~ :)
 - 운영인력 ※ 구성 및 운영현황 별도 첨부할 것.
 - 상 근 : 명 (전문사서 : 명, 군민사서 : 명, 일반 : 명)
 - 자원봉사 : 명 (전문사서 : 명, 군민사서 : 명, 일반 : 명)
 - 운영위원회 : ※ 구성 및 운영현황 별도 첨부할 것.
 - 후원회 등 : ※ 해당 도서관만 작성하되, 구성 및 지원현황 별도 첨부할 것.

☞ 4, 5번 항목은 내용 제한없음. 필요시 별도 자료 첨부 가능.

4. 2014년 세부사업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
 -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
(종류, 내용, 횟수, 참여인원 등)

- 도서
 - 연간(또는 월별, 분기별 등) 구입 권수, 기부 또는 후원 권수 등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립도서관 정책 참여 포함)
 - 타 기관(도서관)과 교류·협력 사항, 시민사서 교육 참여 등
- 홍보
 - 소식지·리플릿·현수막 등 제작, 반상회보 게재 등
- 운영예산
 - 수입예산(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 지출예산(항목별 지출내역) 등
- 기타 추진사항
 - 자체 행사 진행, 인력 관리(도서관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 등) 등

5. 2015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
(명칭, 내용, 횟수, 예상참여인원 등)
- 도서
 - 연간(또는 월별, 분기별 등) 구입 권수, 기부 또는 후원 권수 등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공공도서관 정책 참여 포함)
 - 타 기관(도서관)과 교류·협력 사항 등
- 홍보
 - 소식지·리플릿·현수막 등 제작, 반상회보 게재 등
- 운영예산
 - 수입예산(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 지출예산(항목별 지출내역) 등
- 기타 추진사항
 - 자체 행사 진행, 인력 관리(도서관 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 등) 등

6. 사업의 기대효과

-
-
-

7.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소요 사업비 :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근거(서식 변경 가능)

항 목	소요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재 원(보조금, 자부담)
총 사업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등 운영비			
도서 구입			
기자재 구입			

8. 도서관 내부 사진 (안내데스크, 서가, 열람공간, 토론실 등)

--	--

9. 도서관 외부 사진(외부 및 주변환경)

--	--

(건물 외부 모습)

(주변 환경)

정선군 공고 제2015-303호

분묘개장공고 (1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고한읍 중2-8호선(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지구 내 설치된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한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정 선 군 수

1. 분묘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4-4
2. 분묘개수 : 1기(연고자 불명)
3. 개장사유 : 고한읍 중2-8호선(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내 편입
4. 개장방법 : ①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②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6. 안치장소 :
 - 화장장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정선군 하늘터)
 - 봉안장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송동원길 203(정선 하늘공원)
 -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자 : 정선군수(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자(고인)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고 및 열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033-560-2456)
11. 기 타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 시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 치 도 (소재지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54-4번지)



□ 전 경 사 진



정선군공고 제2015-307호

2015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정선군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2015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 월 15 일

정 선 군 수

1. 주 관 : 정선군
2. 추천기간 : 2015. 4. 15. ~ 5. 13.(29일간)
3. 시상부문 및 추천기준

부문	추 천 기 준	추 천 자
문화 체육	문화, 예술, 교육, 군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원장, 학술및문화 예술단체장, 각급학교장, 체육단체장, 읍면장
지역 개발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각 사회단체장, 읍면장
농림 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로 지역주민의 농림업소독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각 기업체대표, 농협·축협·산림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읍면장
사회 봉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각 사회단체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
환경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환경관련단체장, 생태환경과장, 읍·면장

- 공통기준 :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기준일 현재 3년 이내의 공적으로 함

4. 추천 제외대상
 - 당해년도 향토민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
 - 향토민상을 동일 부문으로 1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5. 추천 구비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읍면사무소 비치)
 -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 이력서 1통(단,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함)
 -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기타 공적 증빙자료
6. 수상자 결정
 -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7. 시 상
 -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개최 시 시상
8.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31), 또는 읍·면 총무부서